

청주지방법원 2020. 7. 10 선고 2019가단319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10. K

11. L

변론 종결2020. 6. 19.

판결 선고2020. 7. 1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1994. 8. 2. 접수 제23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1996. 8. 25.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피고 6, 9 : 공시송달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머지 피고들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김지영

별지